

# 임원 및 직원 퇴직금규정

[ 규정 제9호  
제정 2017.01.19.  
인사노무부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에너지공사(이하“공사”라 한다) 보수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 임원 및 직원의 퇴직급여, 유족보상 및 특별공로금 지급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임원 및 직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평균임금”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임금을 말한다.
2. “퇴직급여”라 함은 근속년수에 따라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3. “특별공로금”이라 함은 퇴직하는 임원 및 직원으로서 재직 중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 이외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4조(지급대상)** ①퇴직급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 지급한다.

1. 의원면직
2. 정년퇴직
3. 면직
4. 임기만료퇴직
5. 사망
6. 직원이 임원으로 임명된 경우

②임원 및 직원의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5조(지급기준)** ①퇴직금은 근속연수 1년에 1개월분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지급한다.

②임시직원이 1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할 때에는 재직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③인사규정 제41조에 의한 명예퇴직금은 퇴직당시 기본급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1. 정년잔여기간이 1년 이상 5년 이내인 자 : 기본급의 반액×정년잔여월수
2. 정년잔여기간이 5년 초과 10년 이내인 자 : 기본급의 반액×[60+(정년잔여월수-60)/2]
3. 정년잔여기간이 10년 초과인 자 : 정년잔여기간이 10년 인자와 동일금액

- ④ 인사규정 제42조에 의한 조기퇴직금은 퇴직당시 기본급의 6개월분을 지급한다.
- ⑤ 퇴직금의 지급율을 계산함에 있어 소수점 첫째자리 미만은 절상하여 지급한다.
- 제6조(근속년수의 계산) ① 근속년수의 계산은 임명된 날로부터 계산하여 만12개월을 1년으로 하고 초과월수에 대하여는 월할 계산하되, 15일이상은 1월로,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 한다 다만, 임원이 연임하여 근무하는 기간은 계속 근무년수로 산정한다.
- ② 휴직기간의 근속년수의 계산은 인사규정 제47조 제2항에 따른다.
- 제7조(특별공로금) ① 퇴직하는 임원 및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퇴직 급여액의 200%까지 특별공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순직 및 공상으로 퇴직하는 자
  2. 공사 운영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
- ② 제1항의 특별공로금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얻어 지급한다.
- 제8조(퇴직급여 등의 수령권자) ① 퇴직급여 및 특별공로금 등은 본인에게 지급한다. 다만, 퇴직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
- ② 제1항의 유족범위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관련조항을 준용한다.
- 제9조(퇴직급여의 지급제한) ① 임원 및 직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거나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에는 그 퇴직급여액은 100분의 50을 감하여 지급한다.
- ② 임원 및 직원이 금고 이상의 형에 상당한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에 있거나 형사재판에 계류되어있는 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무혐의 또는 무죄가 확정될 때까지 그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중지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액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 기준액 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최저기준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임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0조(적용제외) 이 규정은 1년 미만의 근무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11조(준용)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다.

## 부 칙

- ①(시행일)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단, 공포일 이전에 시행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 ②(근속년수 계산기간의 경과조치)직원 중 서울주택도시공사 집단에너지사업단에서 근무하다 임용된 직원에 대하여는 제6조에 의한 근속년수 계산 시 임명된 날의 기준은 서울주택도시공사 최초 임명일로 한다.